

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!

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으로
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, 각종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
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Q KS인증을 받았을 때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?

A 전기용품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등이 면제됩니다. 이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면제대상으로 정한 것은 중복시험방지 등을 위한 것입니다.

Q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 상승하면 Relay접점을 끊어주는 온도스위치에 대해 전기기기용 스위치 내 전기기기용 제어소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.

A ‘온도스위치와 자동압력스위치’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추가 지정(’08.12.31, 동 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)된 ‘전기기기용 제어소자’에 해당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출고(통관)되는 제품부터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한 품목입니다.

Q 직류전원(DC 아답터) 및 차량용 시거잭 사용 겸용인 마사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해당하나요?

A 차량용 마사지기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여부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

- 차량 전용의 마사지기(DC어댑터 사용할 수 없는 구조) : 대상 아님
- 일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마사지기 : 인증 대상

Q 전지를 제조업체명으로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라벨을 표시할 경우 제조업체명 대신 국내에서 수입판매하는 업체명을 표시해도 되나요?

A 리튬이온전지 라벨 표시와 관련하여 전지를 제조업체명으로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라벨을 표시할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29조에 따른 별표6에서 “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”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체명 대신 국내에서 수입판매하는 업체명을 표시해도 됩니다.